

<p>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 상징물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이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와 상징물을 외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市長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등 사용료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p> <p>또한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징물관련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p> <p>이상과 같이 서울特別市의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단일한 법적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서울特別市象徵物條例案의 제정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劉大運 수고하였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金宗植 專門委員 金宗植입니다.</p> <p>서울特別市象徵物條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6. 검토보고</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상징물을 규정하고 상징물의 제·개정시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을 기하며,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해 상징물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p> <p>□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동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총 13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p>	<p>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 휘장·캐릭터·시화 등 시상징물의 종류를 구분 규정하고, 우리 시 이미지 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상징물관련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p> <p>○그리고 상징물 제·개정 사항과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내로 구성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p> <p>□다음은 각 조문의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먼저 제1조는 상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상징물’의 정의를 통해 시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p> <p>○둘째,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 제4조는 상징물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이는 넓은의미로써 제5조에서 규정하는 상징물의 관리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제6조 제1항은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6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셋째, 제7조에서는 시장이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상징물의 홍보 및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디자인·애니메이션·패션 등을 21세기 서울형 산업으로 육성가능토록 한 발전적 규정이라 사료됩니다.</p> <p>○넷째, 제8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시상징물의 제규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상징물을 활용함에 있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p>
---	---

는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제9조는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의 제·개정사항 및 상징물관련 사업 등의 민간 위탁과 관련한 심의를 위해 15인 이내로 구성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징물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11조는 사업의 위탁 규정으로서 이는 제7조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제11조를 제7조의2항으로 하고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2조는 동 조례 위반자에 대해 시장이 상표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왔던 시조, 시화, 시목 그리고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휘장과 함께 최근에 제정된 우리 서울특별시의 캐릭터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과 특히 이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복된 조문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象徴物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委員 조례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5가지가 지금 예시되어 있는데 이 예시된 5가지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公報官 崔永福 아가 專門委員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화, 시목, 시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71년도에 꽃, 나무, 새에 대한 시민선호도를 거쳐서 공모전을 가져서 그 때 공모를 해서 이것이 서울市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市長 명의로 지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물조례에 포섭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휘장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고, 이번에 캐릭터를 새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 5가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는 상징물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李達源委員 71년도에 市長 명의로 지정이 된 것인가요?

○公報官 崔永福 네, 그렇습니다.

○李達源委員 그러면 71년도 이후로 지정된 상징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령 개나리라든지 은행나무, 까치가 서울市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별로 서울시민들이 느껴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시화나 시목, 시조를 서울시민에게 좀더 전달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어요?

○公報官 崔永福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을 구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화, 시목, 시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휘장, 캐릭터를 홍보할 때 이 분야도 같이 홍보해서 전 시민이 같이 시화, 시목, 시조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